



군교육 훈련학점 인정규칙

규정번호	3-3-20
제정일자	2010.03.01
개정일자	2012.04.30
개정번호	Ver .2
총페이지	3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학칙 제31조의 2에 따라 본 대학 입학 후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·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(이하 “학점인정”이라 함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신청인”이라 함은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.
- ② “이수과목”이라 함은 신청인이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·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신청인이 이수한 과정을 말한다.
- ③ “취득학점”이라 함은 신청인이 “이수과정”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
- ④ “인정과목”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신청인이 학점인정을 원하는 과목을 말한다.

제3조 (신청인의 자격) 신청인은 본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해야 한다.

- ① 군입영을 사유로 휴학 후 복학한 자
- ② 군위탁생 또는 군인 신분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

제4조 (학점인정의 기준) ① 이수과목이 인정과목과 동일하거나 동등해야 한다.

- ② 신청인 1인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, 년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이수과목의 학점수가 인정과목의 학점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인정과목의 학점수로 인정한다.
- ④ 이수과목의 학점수가 인정과목의 학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- ⑤ 인정과목의 평점은 이수과목의 취득 성적에 따라 인정한다.

제5조 (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심사) ① 신청인은 인정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의 개강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인정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의 개강이후 복학한 경우에는 복학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군교육훈련학점인정 신청서
 - 2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된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서
- ② 총장은 ①항의 신청에 대해 학점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

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학점인정 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
③ 총장은 학점인정자격 심사의 권한을 해당학과 학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 (학점인정의 확정) 신청인은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인정과목의 강좌에 수강신청한 후 해당학기가 종료되면 학점인정이 확정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학과장

군 교육 훈련 학점인정신청서

결 재	계	팀 장	부처장	처 장	총 장
				전 결	

소 속						20 학년도	
학 번	성 명		☎ 연 락 처	집 휴 대 폰			
군 교육훈련 학습과목			본 대학 인정과목				
과 목 명	학점	성적	과 목 명	이 수 구 분	학점	성적 (등급)	담당교수
							(인)
							(인)

상기와 같이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: _____ (인)
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

※ 첨부서류 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.